



Korean Tax Newsletter

2 October 2026

CONTENTS

세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세무동향

- 2026 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예규판례

○ 법원

- 본세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취소되는 경우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을 다룬 사건
- 영업이익률 기준 정상가격 정산구조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상표 등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무상수입 부품이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

○ 조세심판원

-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 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된 청구할인액이 정유사의 대리점에 대 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전소득금액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 경정청구 시 적용되는 경정청구기 한 등에 관한 사안

○ 행정안전부

- 생산설비가 옥외에 정착되어 제조시설용 건축물 없이 부대시설용 건축물만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 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범위
- 부과제척기간(2 개월)이 경과하여 국세 환급통보를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등

○ 국세청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잔여 감면 대상 과세연도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세법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정부는 '26.9.29.(화)에 개최된 제 42 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3.(월) 「2026 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 등으로서, '26.9.30.(수) 공포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2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 특례기간 단축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 년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 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3 년에서 2 년으로 단축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등 적용기한 설정

-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영구히 적용되고 있어,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향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 현재는 2 년간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양도소득세 1 세대 1 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 억원 이하분)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30 ⇒ 80%)의 거주요건(2 년)을 면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적용기한('26.12.31.)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후 1 년(최대 '29.12.31.*)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
* '26.12.31.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 '27.12.31.까지 적용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 년 연장(~'27.12.31.)

○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함으로써,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세무동향

2026 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2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 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 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9.2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2026 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협력의무 성실 이행 납세자는 상주조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
-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기업이 경영상 중요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3 개월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시기 선택
- (중점검증항목 사전안내)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성실신고 유도로 가산세 부담 경감, 조사 시 자료준비도 지원
- (중소기업) 우리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포상 중소기업*(중기부 선정)」을 정기조사 유예대상에 추가

* 중소기업 대회, 벤처 창업·진흥 등에서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26 이후)

○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추진 방안

- (법령제정) 효율적 징수수단(압류·공매, 명단공개 등) 도입, 과세정보(소득·재산) 활용, 체납 징수권한의 국세청 일원화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 제정
- (집행체계 정비)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징수하는 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예규판례

[법원] 본세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취소되는 경우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을 다룬 사건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 두 30772 판결, 파기환송)

■ 쟁점

1. 포탈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결과 본세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취소되는 경우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 1609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2 각 목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본세의 포탈 여부나 그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10 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사안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하던 원고들이 건설회사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5 년이 지난 시점에 본세와 각종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서 정한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됨(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 두 549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본세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가산세 역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 두 57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 두 33285 판결 등 참조)

한편 2010. 10. 27. 법률 제 10405 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2 는, 제 1 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가산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정하면서 부정행위로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을 위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 개정이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 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한다.’라는 것임.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2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제 1 호의 2 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 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 두 41314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해 부과된 각 가산세 합계 1,041,540,159 원에는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가산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모두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본세 부분의 부과제척기간 5 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2 제 1항 제 1 호의2에 따라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유형과 그렇지 아니한 유형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일 전자의 유형에 속할 경우 본세가 본 소송과정에서 취소됨으로써 해당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되었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원] 영업이익률 기준 정상가격 정산구조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상표 등의 사용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 두 30813 판결, 상고기각)

■ 쟁점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 12 조 제 3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 160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제 8 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의 의미

■ 사안

원고는 이탈리아 법인 A 와 사이에, A 가 제공하는 각종 품질기준을 준수하면서 A 의 상표를 자기의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 등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제 3 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의 정상가격 범위 대비 일정 수치를 초과한 경우 A 에게 영업이익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A 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이 A 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의 사용이나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협약’) 제 12 조 제 3항은, 같은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사용료’에 대해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 사건 조세협약 제 3 조 제 2 항은 일방채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채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앞서 본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는 이 사건 조세협약 제 3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협약의 ‘문맥’으로부터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음

구 상표법(2022. 2. 3. 법률 제 188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같은 항 제 11 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나목),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다목)를 의미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금액은 이 사건 상표 또는 그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구 상표법상의 ‘상표’ 등이 갖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사상품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국제

적으로 저명한 이 사건 상표에 대해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아 간판 등에 이를 표시한 것은,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구 상표법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함. 이 사건 지급금액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이 마련한 정산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 또는 그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품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비용이 발생함. 이러한 품질기준의 준수 및 브랜드 명성 유지에 따른 매출증대는 소외 회사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외 회사가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자체를 증대시킴. 이 사건 계약에서와 같이 원고에게 일정한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산방식이 채택된 것은 위와 같은 특수성이 감안되었기 때문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양방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본질을 달리 파악할 수 없음

[법원] 이 사건 무상수입 부품이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 두 30644 판결, 상고기각)

■ 쟁점

1.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 관련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2.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 사안

원고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하는 미국 A회사의 국내 관계회사로서, A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장착된 부품의 추가 공급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이 사건 부품을 국내에 무상으로 반입할 때 그 수입신고인이 되어 수입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입부가가치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 피고가 이 사건 부품의 수입거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A 회사와 국내 고객사이므로 해당 수입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품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부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애초에 이 사건 부품은 이 사건 판매회사와 국내 고객사 사이에 체결된 장비판매계약의 대상물인 반도체 제조장비에 포함된 것으로서 위 계약의 이행 차원에서 수입되는 것이므로, 그 거래의 당사자는 이 사건 판매회사와 국내 고객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고객사에 인도할 의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판매회사에 있음

이 사건 부품의 대금은 반도체 제조장비 대가에 포함되어 국내 고객사에서 이 사건 판매회사로 직접 지급되고, 원고는 이 사건 판매회사와의 판매지원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의 수입에 소요되는 관세 등 비용을 지출한 다음 이를 이 사건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상환받음. 위 판매지원 서비스 계약에 따르면, 화물운송, 관세·부가가치세 납부 및 보험료 지급, 선적 등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 판매회사가 단독으로 부담하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판매회사의 이 사건 부품 수입 및 인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2019 사업연도 원고의 개별기업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판매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이 사건 판매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원고는 이 사건 판매회사와 국내 고객사 사이의 중개자 또는 의사전달 창구 역할만 수행할 뿐임

이처럼 이 사건 부품의 수입에 따른 경제적 손익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판매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이 사건 부품의 수입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에 의해 영위하는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의 수입 및 인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판매회사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임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위탁계약의 이행을 위한 부품 수입의 사업관련성 및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에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 서 0762, 2026.7.8., 취소)

■ 쟁점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의료기기·의료용구 등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병원·기관에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기간 동안 병원·기관이 해당 장비에 필요한 전용시약·소모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병원·기관에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의료장비를 임대하였음

청구법인은 2020 사업연도에 A, B, C에 임대한 장비를 폐기하고 동일·유사 기능의 장비(이하 “쟁점의료장비”)를 취득하여 D, E 등에 임대하여 공급하였고, 장부상 의료장비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순증가분을 제외한 취득분(취득금액 000 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대체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20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의 경우에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쟁점의료장비 취득은 증설투자로서 대체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의료장비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설치장소가 아닌 병원 등에 임대한 것은 노후화된 기계를 폐기한 장소에 신규로 동일 기계를 투자하는 대체투자가 아니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

청구법인이 의료기기·의료용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전용시약·소모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병원 등에 의료장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의료장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폐기한 의료장비와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한 쟁점의료장비를 폐기 수량만큼 신규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장비의 취득이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된 청구할인액이 정유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 부 3245, 2026.7.13., 기각)

■ 쟁점

청구법인의 자영 주유소가 제휴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쟁점할인액을 제공하고 이를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가 부담하여 자영 주유소에게 보전한 경우,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석유제품, 가스, 윤활기유, 화학제품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와 원유 및 상기 각 제품의 수출 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 및 본점과 계약을 맺은 자영대리점(이하 “자영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이하 청구법인과 자영 주유소와의 거래를 “제①거래”라 한다)하며, 직영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석유제품을 주유 고객에게 판매(이하 자영 주유소와 주유 고객과의 거래를 “제②거래”라 한다)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BBB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와 공동 마케팅에 관한 계약(이하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카드사 회원이 제휴카드를 통해 청구법인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1 리터 당 일정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을 청구할인카드대금 청구 시 할인하여 청구하는 청구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자영 주유소와 공급계약의 부속 약정으로, 고객에게 제휴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였음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이 자영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과 카드사 양사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발생한 마케팅 비용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석유제품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 제 1 호 본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5 항 제 1 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내용과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 두 5317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제①거래의 공급자로서 제①거래 과정에서 제①거래의 공급받는 자인 자영 주유소에게 제①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쟁점할인액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②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제②거래의 공급받는 자인 최종소비자가 제②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제②거래의 공급자인 자영 주유소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쟁점할인액을 할인받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①거래와 관련하여 자영 주유소로부터 판매가액 전액을 지급받은 점, 제②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최종소비자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해당 이익이 오로지 청구법인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정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이전소득금액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 경정청구 시 적용되는 경정청구기한 등에 관한 사안

(조심 2026 서 0992, 2026.8.10., 재조사)

■ 쟁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이전소득금액 증액 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자동차 사용설명서 등을 생산하여 A(주)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미국, 멕시코에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인쇄기술 등을 이전하고 해외자회사의 생산제품을 A(주)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납품하도록 하였음.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로부터 인쇄기술 등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해 수취한 사용료를 2019~2023 사업연도 법인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취한 사용료가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보아 2024.10.29. 청구법인에게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 000 원(이하 “이전소득금액”)을 포함한 조사적출 소득 000 원을 익금산입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음

처분청은 2024.11.13. 청구법인에게 2019~2023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전소득금액 증액 등 세무조세 결과에 따른 익금산입에 대해서는 불복 없이 2024.11.29.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2025.9.24. 이 건 이전소득금액의 익금산입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증액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이하 “쟁점규정”)의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기한 3 개월이 경과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 ‘각하’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처분청의 이전소득금액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쟁점규정 단서에 따라 경정청구기한 3 개월이 적용되므로,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처분은 이전소득금액의 익금산입에 대한 처분이고, 청구인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증액으로 인한 외국납부세액 추가공제를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양자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로 주장하는 바와 처분청의 증액경정 처분이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쟁점규정 단서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다룰 수 없으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5 년간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24.06.27. 선고 2021 두 3999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은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처분청의 이전소득금액 증액으로 국외원천소득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접대비 지출내역 등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상세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출처 등을 처분청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접대비 지출내역 중 상품권 및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국외원천소

득에서 차감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반영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행정안전부] 생산설비가 옥외에 정착되어 제조시설용 건축물 없이 부대시설용 건축물만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범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794, 2026.6.9.)

■ 질의

건축물은 사무실, 직원 휴게실, 창고 등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제조설비는 건축물 외 지상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범위

회신

「지방세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3 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103 조 제 2 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52 조에 따라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50 조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이 때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52 조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사무실·창고·경비실 등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 50 조 및 별표 6 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때 연면적의 범위에는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도 포함함

이와 같은 규정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등에 직접 사용되는 제조시설뿐 아니라 사무실, 창고, 경비실 등 부대시설도 제조시설과 하나의 경제적·기능적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임

질의와 같이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을 건축물 외 지상에 정착하여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은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지상에 정착한 제조시설을 통해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등이 이루어지며 건축물 내의 사무실, 창고 등이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 근로자의 생산성 유지, 제조 등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 등의 보관 등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건축물은 제조시설과 하나의 경제적·기능적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조시설용 건축물 없이 부대시설용 건축물만 있는 경우라도 지상에 정착된 제조시설과 동일한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시설용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행정안전부] 부과제척기간(2 개월)이 경과하여 국세 환급통보를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등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683, 2026.6.15.)

■ 질의

(쟁점①) 부과제척기간(2 개월)이 경과한 국세환급 통보 자료의 환급 가능 여부

(쟁점②)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 통보자료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국세환급 통보 자료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지방세법 제 103 조의 59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3 항에서는 제 1 항 제 5 호 및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환급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을 근거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4 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 64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3 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를 제 1 항 제 5 호 및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하면서 괄호 단서로 “지방세기본법 제 38 조 제 2 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지방세법 제 103 조의 59 제 4 항 규정은 2022 년 신설된 규정으로 국세 환급 이후 환급사실이 통보될 경우 통보를 받은 날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국세 환급통보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조치임(‘22 년 시행 지방세관계법 적용요령, 지방세정책과-34, 2022.1.4.)

한편, 제 4 항 괄호에 단서로서 “지방세기본법 제 38 조 제 2 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 38 조 제 2 항의 부과제척기간 내 환급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세 환급자료 통보시에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한 규정 및 해당 개정안 괄호안의 단서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결정 등을 한 경우는 제외토록 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국세 환급 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 년 이내인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

②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국세 환급 통보 자료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

지방세법 제 103 조의 32 제 1 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제 103 조의 29 에 따라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제 103 조의 23 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제 103 조의 19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같은법 시행령 제 100 조의 22 제 2 항에서는 법 제 103 조의 32 제 1 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세법 제 103 조의 59 제 3 항에서 제 1 항 제 5 호 또는 제 2 항 제 5 호에 따라 국세 환급통보를 받은 경우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지방세법 제 103 조의 3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규정과 동일하게 국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 62 조 제 1 항 규정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에 대하여 선택권을 부여하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일단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로 비영리내국법

인이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0 구 3885, 2011.3.10. 참고)한 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징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환급 자료가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①·②는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해석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정부에서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임

[국세청]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잔여 감면 대상 과세연도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법인-3077, 2026.8.12.)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 증가로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잔여 감면대상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잔여 감면대상 과세연도에 대하여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1 년 3 월 설립되어 온라인·모바일 게임개발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해당)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업 후 3 년 내인 2022 년 6 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음
- 질의법인은 위 벤처기업 확인 후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2023 년부터 5 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나, 2023 년 관계기업과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2023 년부터 2026 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2027 년부터는 중견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창업벤처감면 대상 여부	2021.3. 설립	2022.6. 벤처확인	75%감면	75%감면	75%감면	50%감면	50%감면
조특법상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유예기간	유예기간	유예기간	중견기업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 증가로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잔여 감면 대상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벤처기업은 해당 잔여 감면 대상 과세연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34

jikim@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